

운영 규정 개요-2025년

I.기본정보

기관명	다온복지센터	설치 일자	2019. 05.13
시설종류	재가노인복지시설	급여 종류	방문요양, 방문목욕
소재지	파주시 새꽃로 206-2 104호	이메일 /블로그	https://blog.naver.com/daon_272
전화	031-943-3476	FAX	031-944-3475
영업시간	평일- 09:00-18:00 주말 및 공휴일 -필요시	교통편	경의선 금촌역 2번출구/ 도보 3분
이용대상	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 요양 등급 (1등급 - 5등급)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.		

II.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

1. 이용정원 :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을 두지 않는다.
2. 이용자 모집방법 :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, 기관 홈페이지, 지역신문,지인 소개, 대상자 방문상담, 지역사회 내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.

III.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계약목적	①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(보호자)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.
급여계약	①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.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. ②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. ③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.
계약기간	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.
계약해지	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심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 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,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
신원인수인 권리	①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 ②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③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,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신원인수인 의무	①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 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
배상책임보험	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.
운영규정참조	사무실내 비치되어 있음.

IV. 기타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

계약목적	①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(보호자)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.
급여계약	①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.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. ②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. ③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.
계약기간	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.
계약해지	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심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 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,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
신원인수인 권리	①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 ②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③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,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신원인수인 의무	①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 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
배상책임보험	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.

○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

- 방문요양 : 신체활동 지원, 인지활동 지원, 정서지원,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
기타 장기 요양급여제공 서비스
- 급여 비용및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한다.
-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.

○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,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

- (배상책임)
-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 과실로 인해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- 종사자가 수급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케 하였을 때
- (면책 범위)
-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시
 - 수급자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
 -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
 - 수급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 시
 - 수급자의 특이 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, 입원, 사망한 경우

-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
 - 불만 및 고충 접수(서면, 유선, 이메일) →기록 및 보고→조치→고충 처리 결과 통보 및 완료
- 기타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
 - 인력관리 규정, 보수에 관한 사항, 복리후생,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및 운영 규정을 기관에 상시 비치함

◆ 최 저 임 금 고 시 ◆

적용년도	적용대상	최저임금액 (주40시간 기준)			인상률 (%)
		시급	일급	월급	
2025	모든 사업장	10,030	80,240	2,096,270	1.7%
2024	모든 사업장	9,860	78,880	2,060,740	2.5%
2023	모든 사업장	9,620	76,960	2,010,580	5.0%